

제2절 귀의 장애



<귀의 구조>

1.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

장애등급	장애정도
3급 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-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-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% 이하인 자
4급 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-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-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% 이하인 자

2. 인정요령

가.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.

나. 청력장애

(1)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(오디오미터)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

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, 청성뇌간반응검사,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,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2~7 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.

(2)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.

(가) 평균순음청력역치

-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(decibel)치는 주파수 500Hz, 1000Hz, 2000Hz, 4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, b, c,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.

$$\text{평균순음청력역치(PTA)} = \frac{a+2b+2c+d}{6}$$

- 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.
 ③ 상승법 · 하강법 · 혼합법은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 데시벨 이내로 한다.
 ④ 반복검사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.

(나) 최대어음명료도

- ① 검사는 녹음기,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여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생 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행한다.
 ② 검사어는 “어음명료도 측정표”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한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생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.

$$\text{어음명료도(\%)} = \frac{\text{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}}{\text{검사어수}} \times 100$$

-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%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.

(다)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청각중추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피부전극을 사용하여 생체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90데시벨에서 10데시벨 간격으로 역치까지 측정한다.

- (라)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등이 정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등골반사를 비교함으로써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.
- (3) 직업성 난청에 대하여는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은 장애근로자가 “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”를 떠났을 때 행한다.
 - (가) “강렬한 소음”이라 함은 5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된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상 되는 소음 또는 그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하일지라도 순간적 측정치가 110데시벨 이상인 소음을 말한다.
 - (나)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(Phon)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며 청력검사 전 90일 전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.
 - (다)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 전 8일 내지 90일 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2~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.
- (4)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은 급성 음향 외상성 내이장애로 직업성 난청과 구별한다.
- (5) 일반적으로 음향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치료종결 후 3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그 청력검사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.

다. 기타 기능장애

- (1)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(耳漏)는 수술 등의 치료 후에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(2)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「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」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.